# 한국광업공단법안 (이장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0

발의연월일: 2020. 6. 26.

발 의 자:이장섭·송갑석·고민정

신영대 · 이학영 · 이원욱

임종성 · 김병욱 · 김주영

김성환 · 김용민 · 김철민

유동수 · 강득구 · 임호선

의원(15인)

#### 제안이유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대규모 투자 손실로 인하여 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채무불이행 위험이 초래된바, 정부의 기능조정 방안에 의거하여 재무적인 안정성을 제고하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지원과 광산피해의 관리에 걸쳐 전주기적인 광업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적기능을 수행토록하기 위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고자 동 공단의 자본금·자금조달·사업범위·양 기관의 권리의무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종전 광물자원공사의 대규모 부채로 인한 신설공단의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자산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자산계정의구분 및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 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함(안 제1 조).
- 나. 한국광업공단은 법정자본금을 3조원으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의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12조).
- 다. 한국광업공단의 사업범위는 종전의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 자원공사가 수행하던 사업으로 하되, 기존의 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였던 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 광산 직접경영, 해외법인 출자에 관한 사업은 유동성 관리를 위해 자산매각 시까지 유지 후, 폐지하고, 해외투자자산의 관리 및 처분, 민간의 광물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남북 경협에 대비한 남북 간 광물 자원개발 및 광물자원 산업분야의 협력사업 신설 등 변화된 환경에 따라 공단의 사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8조).
- 라.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한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자산 및 부채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공단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공단에 해외자산계정을 두어 공단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게 하고, 계정 내 재원의 조달 및 지출을 제한함으로써

종전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부채로 인하여 통합공단이 동반 부실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

- 마.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은 폐지하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며, 한국광업공단은 이 법의 시행으로 해산되는 한국광해관리공단, 광물자원공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제2조, 제6조제1항).
- 바.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 총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단설립위원회를 설치함(안 부칙 제3조).
- 사.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한 광물 관련 사업으로 인한 자산(이하 "해외자산"이라 함)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 해외광물자원투자 자산 매각 관련 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자산을 처분하도록 하되, 해외자산의 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행하도록 함(안 부칙 제10조).

### 한국광업공단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 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한국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공단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사·출장소·사무소 또는 주재원(駐在 員)을 둘 수 있다.
- 제4조(자본금) 공단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出資)한다.
- 제5조(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 써 성립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지사·출장소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단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

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6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사장(社長)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가 공단을 대표한다.
- 제7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8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업을 한다.
  - 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 2. 광산별 광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광해방지대책 강구
  - 3. 광해방지에 관한 국제 기술협력사업, 국제조달사업 및 공적개발 원조사업
  - 4. 광해로 인한 손해배상
  - 5. 광산지역의 환경개선사업
  - 6.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다른 법률에서 부담하여야 할 채무 등의 이행보증
  - 7. 「석탄산업법」 제2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지원

- 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진 흥지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 사업
- 9. 광물자원(석재 및 골재자원을 포함한다)의 탐사·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와 경영
- 10. 광업과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의 관리·처분 및 광물자원(석재 및 골재자원을 포함한다)의 민간개발에 대한 지원
- 11. 광물자원의 탐사·개발·가공·비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 12. 광산물의 비축·매매 및 대여
- 13. 광물자원 관련 시설·장비의 매매 및 대여
- 14. 광산 안전을 위한 교육훈련·기술지도 및 장비지원
- 15. 광물탐사자료의 수집·활용 및 관리
- 16. 남북 간 광물자원 개발 및 광물자원산업분야 협력사업
-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또는 분야 에 대한 용역·연구·통계관리·정보화 및 부대사업
- 18.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② 제1항제12호에 따른 광산물의 비축을 위한 대상품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9조(공단의 권한) 공단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수행 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소유자 등의 주소

및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받은 개인정보 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경비 등의 부담)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관계 기관 또는 수 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② 공단은 제8조의 사업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1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자본금과 적립금
  - 2. 국내외로부터의 차입금(借入金)
  - 3. 제12조의 사채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 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 5. 자산운용수익금
  - 6. 제16조에 따른 보조금과 출연금
  - 7. 그 밖의 수입금
  - ②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융자되는 자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사채의 발행) ①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 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③ 사채의 소멸시효는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 ④ 그 밖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 1.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
  - 2.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 준비금에 적립
  - 3.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에 적립
  - 4. 국고에 납입
  -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 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 할 수 있다.
- 제14조(해외자산계정의 설치) ①「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의해 설립

된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한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자산 및 부채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공단의 고유계정과 구분 되는 계정으로서 공단에 해외자산계정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자산계정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구분회계 처리되는 해외자산계정에 대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이 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이 계정으로부터 다른 회계로 자금을 이체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 이체가 필요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때 이체 받은 자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다시 다른 회계로 이체하여야 한다.
- ③ 해외자산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 1. 출자금 또는 보조금
- 2. 국내외로부터의 차입금
- 3. 제12조의 사채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 4. 해외자산계정 수익금
- 5.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익금 중 일부
- ④ 해외자산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 1. 해외자산계정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급 또는 부채의 상환
- 2. 해외자산계정의 조성 · 운용 및 관리를 위한 자금
- 3. 그 밖에 해외자산계정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용도

- 제15조(폐광지역지원 재원의 처분 등 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폐광 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원을 해외자산계정의 부채관리를 목적으로 매각,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 1.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단에서 출자한 법인에 대한 주식 과 그 배당금
  - 2. 탄광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석탄회관
  - 3.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융자재원
- 제16조(보조금과 출연금) ① 정부는 공단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공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1. 운영비의 일부
  - 2. 광해방지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
  -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광해방지실시 계획에 따른 가행광산·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관한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 4. 다음 각 목의 광산에 관한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가. 「석탄산업법」 제39조의2에 따라 폐광하는 석탄산업합리화탄 광
    - 나. 광해발생원인자가 없는 폐광된 금속 및 비금속 광산
  - 5.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위탁받

- 은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에 필요한 비 용
- 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긴급광 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 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 8.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채무이행보증사업에 필요한 비용
- 9. 광해방지 관련 국제 기술협력·국제조달·공적개발원조사업에 필요 한 비용
- 제17조(조세지원) 공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① 공단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하면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자에게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복사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 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교부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
-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광업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0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 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1.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 3.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해외자산계정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단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23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조(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광업공단, 한국광해관리공 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 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은 폐지한다.

- 제3조(공단설립위원회의 설치) ① 종전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한국광해관리공단"이라 한다)과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 공사(이하 "한국광물자원공사"라 한다)의 해산과 공단의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설립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통 상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공무원,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광 물자원공사 본부장, 그리고 광해관리와 광물자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 ③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공단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가 끝나면 설립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보고, 설립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⑥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을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 제4조(임직원에 관한 조치) ①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광해관리공 단 및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 ② 공단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직원은 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 제5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제6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공단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 원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공 단의 설립과 동시에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밖에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 공사의 명의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의 명의로 본다.
  - ③ 공단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자산 등에 대한 실사 등을 통해 확정된 공단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및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라 행 하여진 것으로 본다.
- 제8조(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단이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 제9조(정부의 출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 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출자한 재 산은 공단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 제10조(해외 자산 매각 등을 위한 경과조치) ① 공단은 한국광물자원 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한 광물 관련사업으로 인한 자산(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산"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외자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외자산의 매각을 대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자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③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로서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광물자원투자 자산 매각 관련한 전문가 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5명
  - ④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사는 속

기로 기록한다.

- ⑤ 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단에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항 각 호의 위원이 될 수 없고, 위원의 자격으로 요구되는 전문성에 관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⑦ 위원회의 업무 보좌와 실무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제8조제1항제9호는 해외자산 전체가 매각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 다.
- 제11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및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다.
-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광산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의4제2항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 공사 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

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업공단"으로 한다.

②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한국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공단의 운영

제30조제2항 중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공단"으로 한다.

제7장(제31조부터 제4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7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③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중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 공사(이하 "광물자원공사"라 한다)"를 "「한국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5호중 "한국광물자원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

- 다)"을 "공단"으로 한다.
-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3항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물자원공사가"를 "「한국광업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업공단이"로 한다.

-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및 「한국광물자원공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을 인용한것으로 본다.